

연구조교장학금 신청 관련 FAQ

1. 전일제 학생이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아닌 학생을 말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2. 단위수가 무엇입니까?

1단위는 등록금의 50% 장학금, 2단위는 등록금의 100% 장학금입니다. 지도교수님 연구실적이 80% 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50%가 지급되며, 지도교수님께서 추가 추천권이 있는 경우(상위 55명) 2단위로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장근로자입니다. 연구조교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께서 추가 추천권이 있는 경우(상위 55명) 1단위(50%)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추천권 여부는 지도교수님과 상의 부탁드립니다.

4.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연구조교장학금은 전일제 학생, 즉 직장에 다니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장근로자 여부를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4-1. 외국인입니다.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까?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 확인 사이트(www.4insure.or.kr)에 가입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가입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소득분위의 비율에 맞추어 장학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정부에 신고합니다.

관련서류는 소득분위판별 및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를 왜 제출해야 합니까?

전일제 학생인 경우 보통 가족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피보험자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즉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발급할 수 없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족분(피보험자)이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께서 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FAX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만 별도로 FAX송부하시는 경우 교학팀에서 어떤 대학원생의 서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 부탁드립니다.(대학원 교학팀 FAX번호 02-918-5683, 전화번호 02-940-5082~3입니다.)

8. 가족과 따로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피보험자이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을 경우 형제, 자매가 나오지 않으니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시 '본인과의 관계'를 부모님 중 한분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외국인유학생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도교수님이 추가 추천권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0. 미리 발급 받아놓은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출 가능합니까?
제출서류 기준일로 재발급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11. 추후에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
아니요. 이번 신청기간이 2차 신청기간으로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12. 박사 5학기입니다. 연구조교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규학기(석사 4학기, 박사 4학기)까지 지급되며, 추가 등록하는 5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3. 석박통합 7학기이며 2학기부터 연구조교장학금을 받았습니다. 7학기에 연구조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구조교장학금 지급시기와 상관없이 석박통합 6학기까지 지급되며 7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4. 연구조교장학금을 지급받고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속 연구조교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 기본단위(지도교수 연구실적 상위 80%에 해당하여 받은 50%) 수령자로 변경된 지도교수가 연구실적 신청당시 상위 80%이상인 경우 :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하여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나. 추가단위 수령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대학원 학위논문예 관한 내규 제4조의2)
15. 서류 제출 장소는 어디입니까?
화도관 2층 207호 대학원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16.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제출하면 됩니까?
FAX제출 가능합니다. FAX 번호는 918-5683입니다.

문의 : 대학원 교학팀 화도관 207호 / 02-940-5082~3 / kwgs@kw.ac.kr / grd.kw.ac.kr